

『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7월 1일

나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8일

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(조례제4조의2)
 - 시단위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,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,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, 농업인대표 등을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구성

-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 심의
 -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 조정, 읍면동의 심사사항 재검토·심의, 사업대상자 확정
 -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(조례제4조의3)
 - 읍면동에서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하여 9인 이내로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
 -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시에 제출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위원회의 설치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, 위원회설치 시에는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기능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함에도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만 되어있고 기능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.
- 따라서 이번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